

무배당 신용보험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확인서

무배당 신용보험의 기초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의 내용이 적합하고,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의 계산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끝.

2023년 12월 일

하나생명보험주식회사

선임계리사 곽 상 현 (인)

사업방법서

(사업방법서 별지)

무배당 신용보험

1. 보험종목의 명칭

구분	상품명칭	보험종목	보장유형	
주계약	(무)(①)신용(②)보험(③)	기본형	사망보장형	
			고도장애보장형	
			사망·고도장애보장형	
		재해형	일반형	재해사망보장형
				고도재해장애보장형
				재해사망·고도재해장애보장형
			단일보험료형	재해사망보장형
				고도재해장애보장형
				재해사망·고도재해장애보장형
종속특약	(무) (①)신용(②)보험(③)보장특약(③)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애보장특약		
		재해장애보장특약		
		5대골절 수술보장특약		
		중대한화상 및 부식보장특약		
		특정성인질환 입원보장특약		
		특정성인질환 수술보장특약		
		식중독 입원보장특약		
		강력범죄보장특약		
		교통재해장애보장특약		
		호흡기질환 수술보장특약		
		호흡기질환 입원보장특약		
		스마트폰관련질환 입원보장특약		
		간질환 수술보장특약		
		간질환 입원보장특약		

※ 동 상품은 상품명칭 중 ①, ② 또는 ③ 안에는 특정단체, 특정직업군 및 계약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해 사용할 수 있음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가. 보험기간 및 가입나이

구분	보험종목	보장유형		보험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주계약	기본형	사망보장형		1년, 2년, 3년	만 19세 ~ 70세	일시납
		고도장해보장형				
		사망·고도장해보장형				
	재해형	일반형	재해사망보장형			
			고도재해장해보장형			
			재해사망·고도재해 장해보장형			
	단일보험료 형	재해사망보장형	1일~1년, 1년, 2년, 3년			
고도재해장해보장형						
재해사망·고도재해 장해보장형						
종속특약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장해보장특약		1년, 2년, 3년	만 19세 ~ 70세	일시납	
	재해장해보장특약					
	5대골절 수술보장특약					
	중대한화상 및 부식보장특약					
	특정성인질환 입원보장특약					
	특정성인질환 수술보장특약					
	식중독 입원보장특약					
	강력범죄보장특약					
	교통재해장해보장특약					
	호흡기질환 수술보장특약					
	호흡기질환 입원보장특약					
	스마트폰관련질환 입원보장특약					
	간질환 수술보장특약					
	간질환 입원보장특약					

※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약을 함께 가입할 수 없음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선택한 주계약 및 특약의 보험료 합계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영업보험료로 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3. 상품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기본형 또는 재해형 중 하나의 보험종목을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한 보험종목에 해당하는 보장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형의 보장유형과 재해형의 보장유형을 교차하여 가입할 수 없으며, 동일한 보장유형을 중복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다.

나. 회사는 주계약 재해형의 일반형 또는 단일보험료형을 동시에 판매하지 않으며, 피보험자 및 채널(제휴사 포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유형만 제공한다.

다. 계약자는 종속특약 중 하나 이상(단, 간질환 수술 보장을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주계약과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이때, 특약을 중복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다.

라. 이 상품이 제휴상품으로 운용되는 경우 기업(계약자)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고객, 회원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상품을 제공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가항 내지 다항을 준용하며 주계약 및 특약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마. '라'에 따라 따라 운용되고 한 계약자에 의해 다수의 피보험자에 대한 청약이 이뤄질 때에는 피보험자 동의서를 연명부로 대체할 수 있다.

바. 제휴상품으로 운용되지 않을 경우 ‘라’ 및 ‘마’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기타

가. 계약인수에 관한 사항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나. 상품 명칭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제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다.

다. 판매채널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판매채널은 온라인 채널을 포함한 범용으로 하며 보험업감독규정 제 4-14 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정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제외한다.

라. 주계약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채무액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된다. 또한 회사는 채무 상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단기요율의 조정

회사는 주계약 재해형 중 단일보험료형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신계약 성립건수 매 1만건 집적시마다 위험율차이에 의한 손익을 보험기간별로 단기요율에 반영하여 조정한다. 다만, “조정된 단기요율을 적용한 보험료”와 “조정된 단기요율을 적용하기 전 보험료”(이하 “조정전 보험료”라 한다)의 차액이 조정전 보험료 대비 $\pm 10\%$ 범위내일 경우에는 회사는 조정전 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다.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별첨 제 2 호)

보험계약청약서의 서식

(별첨 제 3 호)

보험계약 부활(효력회복)청약서의 서식